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안전보건관리 계획(안)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근거를 기반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마련해 안전 안전한 사업장을 실현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 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6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2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추진방향

-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 운영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산업재해 발생 최소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안전보건방침

미션	상상 더 이상을 잇는 문화예술 플랫폼 남양주문화재단			
비전	문화예술로 시민의 삶을 물들이고 미래를 여는 남양주문화재단			
핵심가치	사람을 잇다	문화를 잇다	지역을 잇다	가치를 잇다

재단의 미션, 비전, 핵심가치 기반의 안전보건 추진계획 수립

안전보건방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로 쾌적한 문화재단 실현
--------	-----------------------------

추진전략	안전 보건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
------	-------------------

추진 과제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세부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경영방침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정보 공유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정기점검 · 안전관리교육 · 재해 대응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 · 안전보건사고 목표 관리 · 직무스트레스 진단평가

2 조직 및 현황

□ 인력현황 (정원 21명/현원 19명)

구분	정원	현원	직원			
			3급 (팀장)	4급 (차장)	5급 (대리)	6급 (주임)
계	21	19	2	4	5	8
대표이사	1	1				
경영기획팀	4	2	-	1	1	0
공연전시팀	9	9	1	2	2	4
생활문화팀	7	7	1	1	2	3

※ 공무원 파견 2명 미포함 : 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원

※ 기간제 총 9명: 무대, 음향, 조명 조감독, 티켓 매니저, 더나르떼, 문화의 집
북한강 야외공연장

□ 시설현황

- 지자체 : 남양주
- 총 3개 (다산 아트홀, 북한강 야외공연장, 남양주 문화의 집)

관리팀	시설명	면적(m ²)	시설내용	비고
공연전시팀	다 산 아 트 홀	2,438.58	공연장	
	북 한 강 야 외 공 연 장	431.92	야외 공연장	
생활문화팀	남 양 주 문 화 의 집	378	사무실	

□ 2025년 현황

- 산업재해 발생건수 : 0건
-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사무실 내 게시

3 세부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경영방침 마련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내 용 :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제공 의지 표명의 경영방침 설정
→ 홈페이지 및 전국단위 재단 배포 예정

(재)남양주문화재단 안전보건경영방침 (안)

우리는 '시민 중심의 문화 플랫폼'이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남양주'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임직원과 시민, 종사자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 전반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이에 전 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근무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다채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와 법적 의무이행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언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체계 구축.** 안전보건을 재단 경영 및 모든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확고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여 안전보건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킨다.
2. **안전 법규 및 규정의 철저한 준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과 제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준법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3. **선제적 위험 요인 발굴 및 예방.** 다산아트홀을 비롯한 재단 시설과 문화예술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상시 발굴하고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4.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강화.** 모든 임직원 및 종사자에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
5. **전 구성원의 참여와 책임 완수.** 시민과 종사자의 소통과 협의를 보장하며, 도급·용역·위탁 등 협력업체와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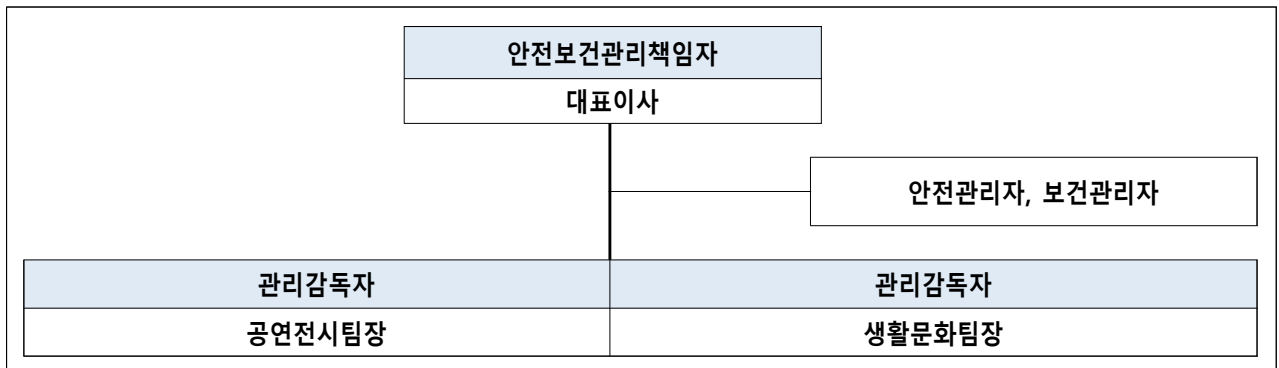
2026년 ○월 ○일

재단법인 남양주문화재단 임직원 일동

○ 산업안전보건법 정보 공유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직원 인식 제고를 유도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
- 운 영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개정내용 포함)한 요약문 또는 사례들을 인트라넷 또는 사내 홍보물 게시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안)



□ 산업안전관리

○ 산업안전 정기점검

- 관련근거: 공연법 제11조의 3, 12조 4항
- 목 적: 관리자 안전 교육 실시를 통한 안전 인식 제고와 공연장 내 시설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의 성능 유지 및 시설관리 수준 유지
- 운 영: 상시적 자체 점검 및 교육 실시

점검명	점검내용	일정	비고
시설물 자체 안전점검	- 시설물의 균열, 노후, 손상 여부 등 육안 점검	안전점검의 날 매월 지정 후 실시	팀 별 담당자 실시
계절별 자체 안전점검	-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등	계절별 수시진행	

○ 안전관리교육

- 추진목적: 안전보건 인식 함양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 직원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추진대상: 재단 전 직원
- 분야별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내용 (2026.5. ~ 2026. 12)
- 안전교육훈련비 : 1인 50천원

구분	구분	기간	주요내용
안전교육	재난안전 관리교육 (온라인교육)	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교육 온라인 교육 등 - 교육명: 생활 속 안전 길잡이 등 - 교육기관: 지방행정연수원 / 국민안전처
	응급처치교육	4회 (분기별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등
	중대재해	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온라인 교육 등
보건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채용시 등
교육 및 실습대응 훈련	소방교육 및 훈련	상·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대피)대비 대응훈련 - 사업소 자체훈련
	지진 대응훈련	4~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대응훈련 - 지진발생시 안전교육 및 대피 훈련
	풍수해·폭염 대응훈련	5~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호우·폭염 등 대비 대응훈련 - 비상연락망 가동 및 예비인력 동원훈련
	대설·한파 대응훈련	10~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한파 등 제설 대비 대응훈련 - 대설: 제설도구 사용법 및 복구훈련 - 한파: 시설물 동파 및 취약 시설 정비

※ 재단 사정에 따라서 실시 기간 및 교육 내용 변경 가능

○ 재해 대응 체계 마련

1. 재해자 발생 시 조치사항

가. 대응조치

- 1) 상황 전파 및 작업 중지
 - 통신설비 이용하여 상황 전파, 즉시 작업 중지
- 2) 초기대응
 -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필요 시 2차 피해방지 위험요인 제거)

사고 상황	초기 대응 방법
심정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CPR)실시,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
감전	즉시 전원 차단 후 부도체(나무 등)로 사고자를 떼어냄
질식	작업을 중지하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재	소화기 이용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 대피
폭발	2차 폭발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폭발 장소에서 대피
기계 재해	재해 발생 시 기계를 정지하여 2차 피해 발생 방지
유해물질 누출	신속히 흐르는 물로 씻어냄
인화성, 산화성물질 누출	점화 원인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를 한 후, 접촉 금지

- 3) 긴급대피
 - 비상대피장소로 이동 및 현장 출입 통제
- 4) 신고 및 보고
 - 상황 발견자, 관리감독자 등이 119신고 및 응급처치 시행
 - 관할 고용노동관서 등에 신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에 보고
- 5) 현장 보존
 - 소방서, 산재예방 근로감독관 등의 현장 보존 지휘 협조

나. 구호조치

- 1) 신속한 연락과 처치
 - 재해발견자는 피해 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전원차단, 기계정지 등)
 - 119신고 및 비상연락체계 전파
- 2) 현장 응급처치 시행
 - 응급처치 시행 등

2. 산업재해 발생보고

가. 산업재해 정의

유형	정의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가스, 원재료,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나. 발생보고

- 1) 산업재해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
 - (보고사항) ① 발생개요 및 피해사항,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산업재해 기록·보존

가. 산업재해 사실 기록 및 보존사항

- 1) 사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함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1항제4조

- ① 산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첨부 보존한 경우 제외

- 2)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간 보존

※ 관련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

4. 재해 재발방지계획(대책) 수립 및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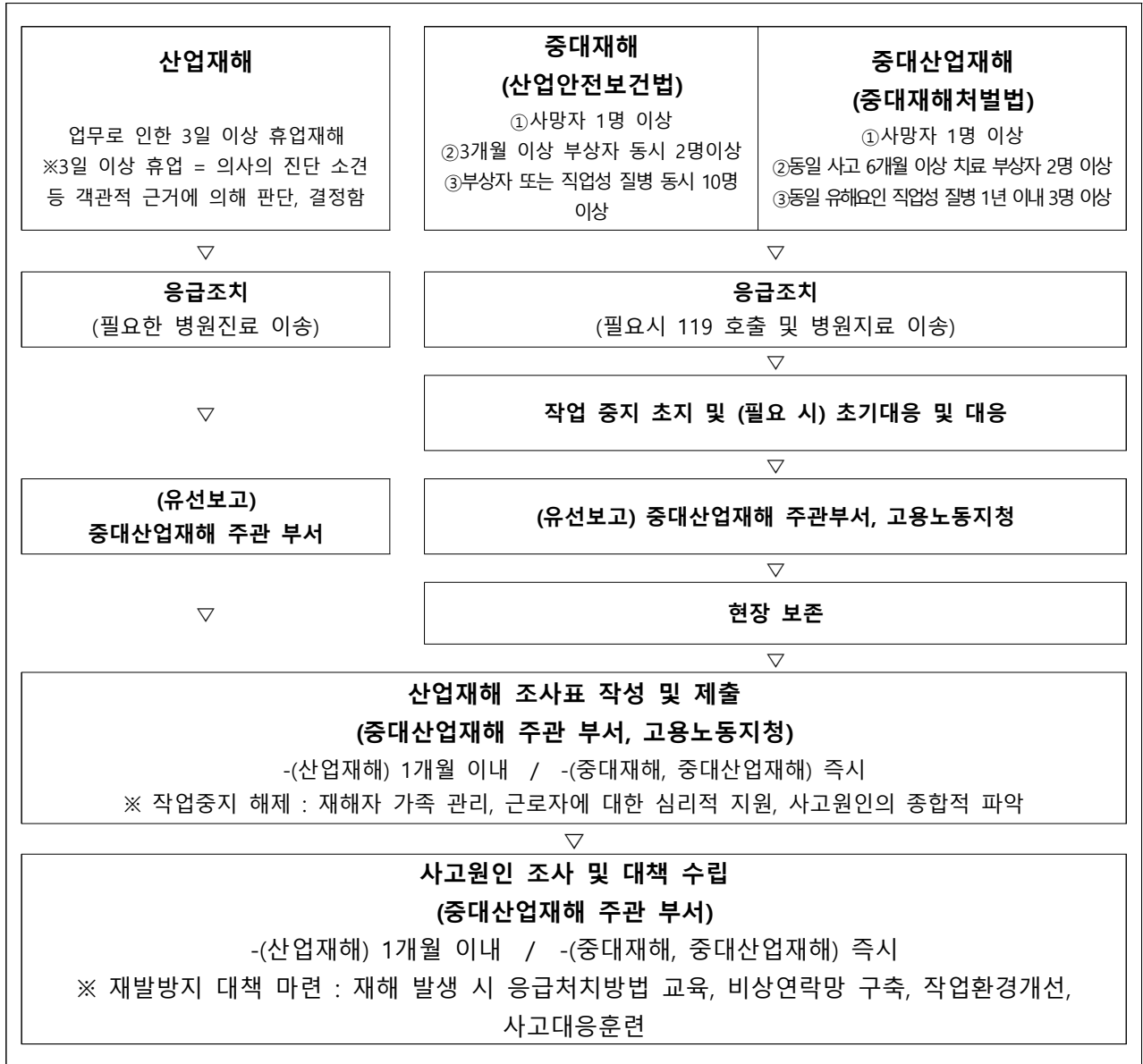
가. 수립절차

사실 확인	-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 파악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사실 수집
▽	
재해요인 파악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 파악
▽	
재해요인 결정	-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 결정
▽	
계획(대책) 수립	-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방지계획 구체적 수립 후 즉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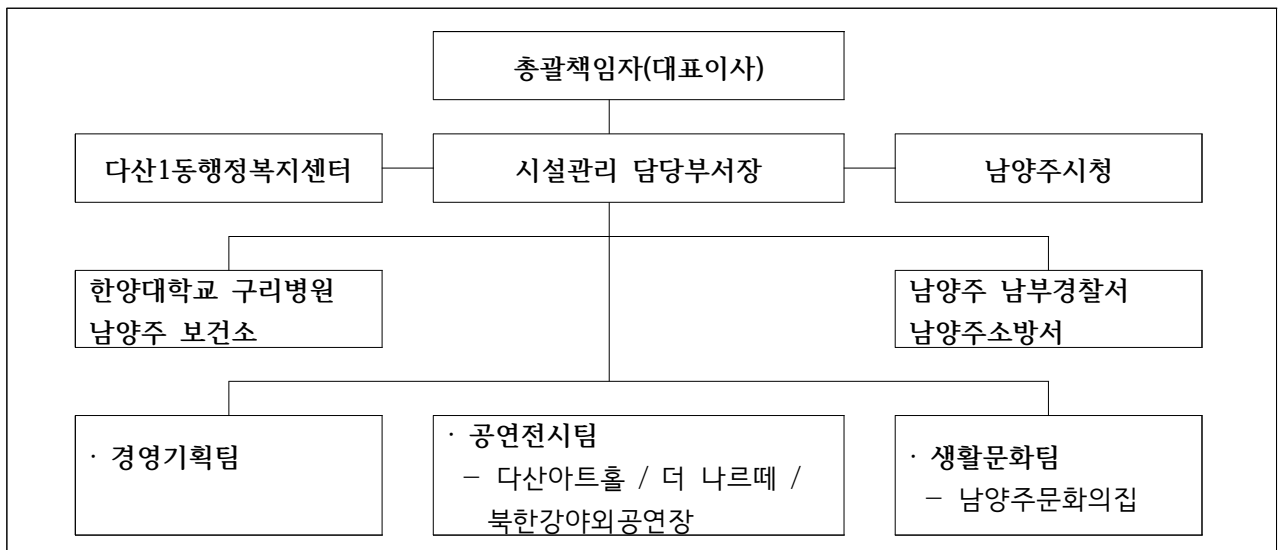
나. 대책공유

- 1) 추가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공유 및 집합교육 실시
- 2) 조치결과를 해당기관장, 관계 행정기관 등에 보고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도



○ 비상연락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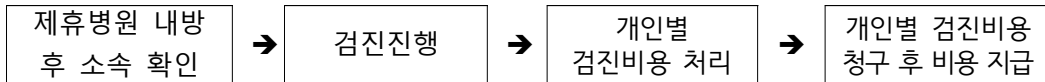


□ 산업보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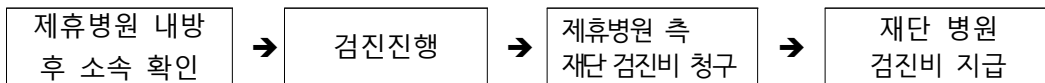
○ 근로자 건강 진단 관리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재단 보수규정」 제33조(건강진단)
- 소요예산: 10,500천원
- 내 용: 직원 대상으로 관내·외 제휴병원 등에서의 건강검진 지원 이원화

• 처리절차 Ⅰ



• 처리절차 Ⅱ



○ 안전보건사고 확보의무 및 목표관리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내 용 :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사항 점검(불임) 및 도급, 용역 등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와 중장기적 안전보건사고 목표 설정

[2026-2028년 안전보건사고 목표 관리]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사고 발생 건수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을 통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 업체 계약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후 계약 체결
- 작업 전 개인 보호구를 포함한 안전 장비 사용 여부 점검
- 사전절차 :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직무스트레스 진단평가

- 대 상 : 전직원
- 목 적 : 과도한 업무량, 경직된 조직 문화 등 직장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부하를 점검
- 운 영 : 총 43문항을 직원이 자가체크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직무 스트레스의 자가체계 구축
- 향 목 : 업무 요구도, 관계 갈등, 조직 체계, 나의 직무 스트레스 위험 수준 정도 등

□ 점검표

구 분	주기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사항
중대 산업 재해	반기 1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점검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졌는가? (다만,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점검을 한 것으로 봄)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을 위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는가?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였는가?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재해 발생 및 발생위험 대비하여 다음의 조치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였는가?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급, 용역, 위탁 시 다음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이행하였는가?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예, 아니오	

년 월 일

기관명:

(인)